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4. 20

나. 제 출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4.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 위원회(2000. 5.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 개정이유

○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며,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 확보 및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화 추진

○ 지역정보화의 산실인 지역정보화본부 설치

○ 정보화촉진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지역정보화촉진 자문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기능 내실화

□ 주요골자

○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내외로 조정(안 제7조)

○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안 제10조)

○ 협의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근거 도입(안 제12조)

○ 지역정보화본부 설치 및 최고정보책임자제 도입(안 제16조)

• 지역정보화본부 :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

• 지역정보화본부장 및 최고정보책임자 : 부단체장 또는 관련 실·국장

○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19조 내지 제22조)

○ 업무의 정보화시 공동활용이 가능토록 호환성과 연동성 확보 및 표준화추진

: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의무화(안 제23조)

○ 정보화업무의 수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 신설(안 제28조)

○ 정보화 관련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대책 강구(안 제30조 내지 제32조)

○ 정보화교육 계획수립 시행 의무화 등(안 제34조 내지 제3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를 5명 증원한 이유는?	○ 정보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정보화를 보다 폭넓고 내실있게 검토하기 위함
○ 현 15인으로는 운영이 어려운가?	○ 여러 계층과 분야의 위원이 있긴 하나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전문가들의 자문이 더 필요함
○ 협의회 최초 구성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의견은?	○ 정보화 관련 분야에서 추천을 받고자 하였으나 전문분야가 사실상 많지 않았고 기관추천 또한 배제할 수 없었음
○ 지역정보화본부는 부천지역에 1개만 설치하는 것인가?	○ 1개만 설치함

○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이유는?	○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임
○ 지역정보센터와 지역정보화본부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 지역정보센터는 시민에게 서비스사업을 하는 것이며, 지역정보화본부는 정보화분야의 팽창에 따른 행정적 내부와 지역정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것이며, 본부산하에 센터가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2호
의결년월일	2000. 5. 3 (제78회)

제출년월일 : 2000. 4. 2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며,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 확보 및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화 추진

○ 지역정보화의 산실인 지역정보화본부 설치

○ 정보화촉진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과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기능 내실화

□ 주요골자

○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내외로 조정(안 제7조)

○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안 제10조)

○ 협의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근거 도입(안 제12조)

○ 지역정보화본부 설치 및 최고정보책임자제 도입(안 제16조)

• 지역정보화본부 :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

• 지역정보화본부장 및 최고정보책임자 : 부단체장 또는 관련 실·국장

○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19조 내지 제22조)

○ 업무의 정보화시 공동활용이 가능토록 호환성과 연동성 확보 및 표준화 추진 :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의무화(안 제23조)

○ 정보화업무의 수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 신설(안 제28조)

○ 정보화 관련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대책 강구(안 제30조 내지 제32조)

○ 정보화교육 계획수립 시행 의무화 등(안 제34조 내지 제38조)

□ 붙 임

○ 현행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 내 정보화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망을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 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일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시·구·사업소의 단위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시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5.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us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료"라 함은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대가 또는 전산정보 자료를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 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시의 경쟁력 강화
2. 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시행

제2장 정보화의 촉진

제4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 및 도의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부천시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 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9. 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장은 주요시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계획) ①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문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2월말까지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6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학계, 언론계, 금융계, 민간단체 등의 장(이하 "유관기관 등"이라 한다)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정보화 관련 전문가, 시의회 의원 2인 이내, 지역정보화본부장, 업무관련 공무원 2인 이내 등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협의회에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정기회는 분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협의회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 및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정보센터

제13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시장은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 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정보센터의 사무소 설치 및 운영관리) ①정보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 및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②시민에게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시에서 운영 관리하며 관리자는 정보화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지역정보센터의 사업) 지역정보센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진흥활동
2.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서비스에 필요한 업무
3.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 또는 전산처리업무
4. 정보화를 위한 홍보, 계몽 및 교육활동
5. 정보화 학술연구 및 관련지원 활동
6. 기타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5장 지역정보화본부

제16조(설치) ①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를 총괄하는 부단체장 또는 관련 실·국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17조(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 운영
5.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
6.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ONE/NON－STOP추진
7.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업

제18조(시설장비) ①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 기타 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 지역정보화본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②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유지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제19조(원시자료) ①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업무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정보화업무 담당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전산정보관리) ①기이 구축된 전산정보는 시장, 구청장 또는 동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1조(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①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업무 담당과장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등) 시장은 제21조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자료를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제23조(업무정보화·표준화) ①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 시스템 분석 및 표준화 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정보화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화 용역) ①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는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용역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5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8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제26조(컴퓨터시스템 도입 설치) 컴퓨터시스템을 설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단말장치 설치운영) ①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업무 담당과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화업무 담당과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수탁업무처리) ①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시장은 타시·군·구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유지보수) 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정보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제9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30조(보안관리) ①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업무 담당과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31조(정보보호)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 및 정정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 강화
5.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32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지역정보화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보험)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제34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교육시설 및 장비확보)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 및 이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설교육장에는 교육에 필요한 관련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등)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방안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3. 기타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시장은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유·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주민의 정보화교육) 시장은 시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별표)

사용료 징수기준(제28조제3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단위 : 원)
기 계 사 용 료	렌터·리스	사용료(월당)×기기사용시간÷월평균기기가동시간
	구 매	구매가격÷5÷12×기기사용시간÷월평균가동시간
인 건 비		6급10호 월평균보수÷30×작업일수
소 모 품 비		실 비
제 잡 비		위 전체금액의 10%
여 비, 기 타		실 비

주)1. 기기사용시간 = 컴퓨터가 해당업무를 수행한 시간

2. 월평균 기기가동시간 = 해당 전산기기의 전년도 월평균 가동시간

3. 월평균 보수 = 기본급 + 장기근속수당 + 전산수당 + 기말수당월평균액 + 정근수당월평균액

4. 인건비

• 일반직 6급 10호(근속연수 10년 기준)

5. 기계사용료

• 임대(렌터), 리스의 계약만료 후 소유권이전 사용시 구매가격은 「최초계약 당시 구입기준가격」으로 함

현행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

개정 1998. 4. 1 조례 제1563호

개정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천시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라 함은 시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의 문제해결이나 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시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부천지역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전자계산조직,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일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시의 경쟁력 강화
2. 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시행

제2장 정보화의 촉진

제1절 정보화촉진계획

제4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 및 도의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8. 기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장은 주요시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구의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부문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2월말까지 협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8. 기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장은 주요시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구의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부문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2월말까지 협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절 협 의 회

제6조(협의회) ①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④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학계, 언론계, 금융계, 민간단체 등의 장(이하 "유관기관 등"이라 한다)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정보화관련 전문가, 시의회의원 2인 이내, 업무관련 국장 2인 이내 등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회의)①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자문) 협의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정 보 센 터

제10조(정보센터 설치운영) ①시장은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센터의 사무소 설치 및 운영관리) ①정보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 및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②시민에게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시에서 운영 관리하며 관리하며 관리자는 정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정보센터의 사업) 정보센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진흥활동
2.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이의 서비스에 필요한 업무
3.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 또는 전산처리 업무
4. 정보화를 위한 홍보, 계몽 및 교육활동
5. 정보화 학술연구 및 관련 지원활동
6. 기타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시장은 정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를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며 이 경우 부천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화 용역) ①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기술성으로 인하여 정보센터에서 자체정보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는 정보화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정보화의 기술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제3장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

제15조(교육시설 및 장비확보)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 및 이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설교육장에는 교육에 필요한 관련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 전담요원 등) 시장은 정보화구축을 위하여 전담요원 등 정보통신기술인력을 양성하며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자체 교육시설 또는 교육환경이 우수한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유·무상의

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7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시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주민의 정보화 교육) 시장은 시민들이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시장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보의 안전한 유통과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8. 4. 1 조례 제15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천지역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정보센터로 본다.

부 칙<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